

충청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97. 6. 17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97. 6. 12

○ 회부일자 : '97. 6. 12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97. 6. 17)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기획관리실장 : 김 동 기)

가. 제안이유

- 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음성소방서를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2조 관련 “별표”(충청북도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

역)에 음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114로 하고 관할구역은 음성군 일원으로하며, 충주 소방서의 관할구역에서 음성군 일원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김 태 인)

충청북도 소방서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음성지역의 각종 공단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음성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5월에 소방관서 설치승인을 받은 사안이고 음성소방서 시설물이 완료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충청북도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